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와 「고흥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고 흥 군 의 회 의 장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재·개정 등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누락된 조항 삽입(제13조, 제14조, 제24조)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 변경 및 선물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제18조)
- 가액: 10만원 → 15만원 / 설날·추석 20만원 → 설날·추석 30만원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가액 범위에 관한 조항 삽입
(제20조)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4. 조례안 예고기간 : 2023. 11. 21. ~ 2023. 11. 26.(6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하다. 의견 제출받는 곳

- 1) 우편 : (59542)/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고흥군의회의회장 (참조 : 의회사무과장)
- 2) 전화 : 061-830-5032, 팩스 : 061-830-5595

붙임 1.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 끝.

[붙임 1]

조례 제2023- 호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을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으로 한다.

제20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영 제25조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2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별표1, 별표2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생략)</p> <p>③ 의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제13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 ----- -----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u></p>
<p>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생략)</p> <p>② <u>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그 귀속·출처를 불문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u></p>	<p>제14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의장은 제1항과 관련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생 략)

③ 제20조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2. ~ 7. (생 략)

④ ~ ⑥ (생 략)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신 설>

제1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1. -----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규정된 ---

2. ~ 7.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 (이하 “외부강의

② ~ ⑧ (생략)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2. (생략)

<신설>

3. (생략)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영 제25조에 따라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

1.·2. (현행과 같음)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현행 제3호와 같음)

[별표 1] (삭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8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삭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0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